

일반관광 (C-3-9)

신청요건

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관광하거나, 대한민국의 공·항만에서 항공기·선박을 갈아타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자.

사증종류 (유효기간 체류기간)

단수 (S): 3 개월 /90 일 더블 (D): 6 개월 /90 일 복수 (M): 1 년 , 3 년 , 5 년 /90 일

신청인 준비서류

1. 사증발급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
2. 여권/여권사본 1매 (사증신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)
3. 경제력 입증자료
 - 사업자 : 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
 - 직장인 :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, 재직증명서
 - 기타 :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유지된 본인명의의 은행거래내역서(공동명의 불가)

※ 은행거래내역서 요약본 제출함
 ※ 다만 한국에 고용허가제(E-9-1)로 근무하는 자의 직계가족의 경우, 사증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간 직계가족에게 송금한 입증 서류(송금장 등 원본서류) 및 은행 내역서(원본), 외국인 등록증 사본(앞 뒤)
 ※ 만 19세 미만 또는 55세 이상은 동반가족과 함께 신청한 경우 제출 면제
4. 혼인관계증명서
 - 미성년자(19세 미만자)의 경우, 본인의 출생등록조회서(부모의 생년월일이 미기재된 경우 부모신분증 사본 제출)

※ 참고사항 : 사망자 가족인 경우 추가 서류

1. 사망진단서
2. 몽골 외교부 협조 공한
3. 혼인관계증명서, 친인척관계증명서